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2. 13.(목) 10:00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72호
- 나. 제 출 자 : 고영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5. 1. 23.
- 라. 회부일자 : 2025. 1. 23.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특히, 여성청소년뿐만 아니라 남성청소년에게도 청소년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청소년 건강 및 복지 증진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지원대상 및 방법과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안 제5조 및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청소년 기본법」 제5조, 제8조
 -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 3) 「양성평등기본법」 제4조, 제5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5. 검토의견

가. 제정 이유

본 제정안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기본 위생용품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

나. 주요 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 :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2조 : 양성평등에 기초하여 남녀 청소년기에 필요로 하는 위생용품에 대하여 정의함

2) 지원대상 및 방법과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 차상위계층,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계획 등은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규정함

3)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안 제5조 및 제6조)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에 필요로 하는 건강·위생용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지원 대상과 절차 등을 수립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히, 성별에 차이를 두지 않고 남성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은 보편적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입법으로 확립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며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본 조례의 지원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서비스 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사항임으로 해당 협의가 필요하다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0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신설 2017. 12. 12., 2021. 4. 20.>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4. 20.>

[제목개정 2017. 12. 12.]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